무배당 건강인우대특약

메트라이프생명보험 주 식 회 사

무배당 건강인우대특약 약관

제1관 보험계약의 성립과 유지

제1조【특약의 체결 및 효력】

① 이 특약은 주된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 보험계약자의 청약(請約)과 보험회사의 승낙(承諾)으로 주된 보험계약에 부가하여 이루어집니다.(이하 주된 보험계약은 "주계약", 보험계약자는 "계약자", 보험회사는 "회사"라 합니다)

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주계약의 보장개시일 이후에 계약자의 신청이 있을 경우에는 회사의 승낙을 얻어 주계약에 부가하여 이 특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.

③ 이 특약을 2인(3인,多人)보장보험에 부가할 경우 이 특약의 피보험자(보험대상자)는 주계약의 계약자 또는 주피보험자(주된 보험대상자)[주계약의 계약자와 주피보험자(주된 보험대상자)가 상이할 경우에는 주피보험자(주된 보험대상자)]로 합니다.

④ 주계약이 해지(解止) 및 기타 사유에 의하여 효력을 가지지 아니하게 되거나 감액완납보험 또는 연장정기보험으로 변경된 경우에는 이 특약도 더 이상 효력을 가지지 아니합니다.

제2조【회사의 보장개시일】

이 특약에 대한 회사의 보장개시일은 주계약의 보장개시일과 동일합니다. 그러나 제1조(특약의 체결 및 효력) 제2항의 경우에는 특약의 청약을 승낙한 경우 청약한 날 이후부터 보장을 합니다.

제3조【피보험자(보험대상자)의 가입자격】

이 특약의 피보험자(보험대상자)는 주계약의 보험 가입적격자(加入適格者)로써 적어도 최근 1년간 어떠한 형태와 종류를 불문하고 담배를 피우거나 씹거나 또는 기타 이와 유사한 형태로 사용(이하 총칭하여 “흡연(吸煙)”이라 합니다.)하지 아니하고, 최대혈압치가(㎜Hg)가 110~139(㎜Hg)이며 BMI(Body Mass Index) 수치(kg/m^2)가 20.0~27.9인자(이하 “우량체”라 합니다.)

제4조【특약의 감액】

① 계약자가 회사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주계약의 보험가입금액을 감액할 때에는 그 감액된 부분은 해약된 것으로 보며, 이 경우 감액분에 대하여는 이 특약도 더 이상 효력을 가지지 아니합니다.

② 감액으로 인하여 보험가입금액이 회사에서 정한 주계약의 최저보험가입금액의 한도 미만이 되었을 때에는 이 특약은 해지되며 감액된 이후 납입해당분부터 할인전 주계약의 보험료로 변경됩니다.

제2관 보험료의 납입(계약자의 주된의무)

제5조【보험료율의 적용】

이 특약이 부가된 경우에는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 정한 바에 따라 우량체 보험료율을 적용합니다.

제3관 보험금의 지급(회사의 주된 의무)

제6조【해약환급금】

① 제4조(특약의 감액) 제1항에 따라 주계약의 보험가입금액을 감액한 경우 감액분에 대한 해약환급금은 이 특약의 부가로 보험료가 할인된 주계약에 해당하는 책임준비금을 기준으로 하여 계산합니다.

② 회사는 경과기간별 해약환급금에 관한 표를 계약자에게 제공하여 드립니다.

제7조【배당금의 지급】

이 계약은 무배당보험이므로 계약자 배당금이 없습니다.

제8조【만기보험금】

이 특약이 부가된 주계약의 만기보험금이 보험료와 연동되는 경우 이 때의 보험료는 이 특약에 따라 할인된 보험료를 적용합니다.

제4관 보험계약시 계약자의 계약전 알릴의무 등

제9조【가입자의 계약전 알릴의무】

계약자 또는 피보험자(보험대상자)는 청약시(건강진단을 받는 경우에는 건강진단시) “비흡연고지서”에서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반드시 사실대로 알려야(이하 “계약전 알릴의무”라 하며, 상법상 “고지의무”와 같습니다.)합니다.

제10조【계약전 알릴의무 위반의 효과】

①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(보험대상자)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에 영향을 미치는 제9조(가입자의 계약전 알릴의무)의 질문사항을 알리지 아니하였거나 알고 있는 사실을 알리지 아니하고 이 특약의 적용전 납입하여야 할 보험료(이하 “표준체보험료”라 합니다)보다 적은 이 특약에 따라 할인된 보험료(이하 “우량체 보험료”라 합니다)를 납입한 경우에는 회사는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과 관계없이 “우량체 보험료”의 “표준체보험료”에 대한 비율에 따라 주계약의 보험가입금액을 감액하고 이 특약을 해지합니다.

② 제1항의 경우 회사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흡연검사를 받고 비흡연자로 판정된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합니다.

제11조【흡연상태의 변경통지】

보험기간중 30일이상 피보험자(보험대상자)가 흡연한 경우에는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(보험대상자)는 지체없이 회사에 이 사실을 서면으로 알리고 보험증권(보험가입증서)에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.

제12조【흡연상태 변경의 효과】

① 회사는 제11조(흡연상태의 변경통지)의 서면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 따라 계산된 금액(이하 “정산차액”이라 합니다)을 계약자가 추가 납입하도록 하며, 계약자는 우량체의 보험료와 동일한 기준(보험기간, 납입기간, 피보험자(보험대상자)의 가입나이 등)으로 산출된 표준체보험료를 향후 납입하여야 하고, 이 특약은 장래에 향하여 해지됩니다. 단, 보험료 납입이 완료된 경우에는 계약자는 정산차액만을 추가 납입하여야 합니다.

② 계약자가 제1항에서 정한 정산차액 및 표준체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을 경우 회사는 “우량체 보험료”의 “표준체보험료”에 대한 비율에 따라 주계약의 보험가입금액을 감액합니다.

③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(보험대상자)가 정당한 이유 없이 제11조(흡연상태의 변경통지)의 통지의무가 30일 이상 늦었을 경우에 회사는 보험금 지급사유의 발생여부에 관계없이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제1항 및 제2항에 준용하여 보험가입금액을 감액하고 이 특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.

④ 주계약의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(보험대상자)가 제3조(피보험자(보험대상자)의 가입자격)에 정한 피보험자(보험대상자)의 자격이 있고 계약자의 청약이 있을 때에는 회사는 제2조(회사의 보장개시일)에 따라 보장을 합니다. 이 경우 계약자는 청약한 날 이후의 해당보험료부터 할인된 보험료를 납입하며, 보험료 변동시점의 책임준비금을 정산한 잔여액이 있을 경우 회사는 이를 계약자에게 환급하여 드립니다.

제5관 기타사항

제13조【주계약 약관 규정의 준용】

① 이 특약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그 성격상 부합되지 않는 것을 제외하고는 주계약 약관의 규정을 준용합니다.

비 흡 연 고 지 서

● 아래 항목에 대해 피보험자(보험대상자)가 사실대로 기재하셔야 합니다.

1	담배를 안 피우신 지 1년 이상 경과되었습니까?	그렇다	아니다
2	청약 전 담배를 피우신 적이 있다면 하루 몇 개피정도 피웠습니까?	( )개피	
3	담배를 끊으셨다면 담배를 피우신 기간은 언제입니까?	년 월 ~ 년 월	
4	담배를 끊으셨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? ① 별다른 이유 없이 금연하였다. ② 건강에 좋을 것 같아 금연하였다. ③ 의사의 권유로 금연하였다.	( )항	
5	의사의 권유로 담배를 끊으셨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? ① 특별한 병은 없으나 건강에 좋지 않다는 의사의 권유에 따라 금연하였다. ② 본인의 질병치료를 위하여 금연하였다. (구체적인 질병 명 :)	( )항	

위의 피보험자(보험대상자)의 흡연상태에 대한 고지내용은 사실과 다름이 없으며, 만일 사실과 다를 경우 이 특약의 약관내용에 따를 것을 확인합니다.

년 월 일

구 분	성 명	서 명
계약자		
피보험자 (보험대상자)		
친권자 또는 후견인		

피보험자(보험대상자) 주민등록번호 : -
(증권번호 :)

메트라이프생명보험주식회사 귀중